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윤 유 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0-131
----------	----------

발의연월일: 2020년 11월 일

발 의 자: 윤유선, 김현희, 이충현, 강선영
신낙형, 이종숙, 황동현, 김성한
김병진, 박성호, 김용원, 최동철
이충숙, 박주선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여 강서구 내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입주자 등, 기본시설, 법률지원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다.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라. 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4조)

마.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바. 실태조사 및 행정지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사. 인권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아.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나. 협조부서: 주택과

다. 입법예고: 2020. 11. 6. ~ 2020. 11. 11.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

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
3. 인권침해 피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 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조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2. 공동주택이 투명하고 체계적이며 평온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할 것
3.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꾀할 수 있도록 할 것

②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은 공동체 생활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웃을 배려하고 관리주체의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